

보도시점 2026. 3. 12.(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3. 12.(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
- 국민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기후시민회의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우선,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한편,

그간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전주기 지원* 또한 강화토록 했다.

* (중고교) 인접학교 우선 배정, (대학) 교육비 지원, (직장인) 연 12일내 치료휴가 보장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했다.

* 전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회복력 낮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③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그간 접착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을 관리했으나, 환각물질 효과 등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환각물질 불법유통의 차단을 강화했다.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해외진출 사업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 (기존)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인증 취득 등 → (추가) 사업발굴 및 수주지원 등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수문자료의 생산·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지방정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5년마다 실시토록 하여,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 최근 빛환경 영향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전형호 (044-201-639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석 (044-201-6744)
(탄소중립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1-6640)
		담당자	서기관	이지선 (044-201-665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손선미 (044-200-1916)
		담당자	사무관	이광현 (044-200-1919)
(화학물질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손명균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진동일 (044-201-6832)
(물산업진흥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김선아 (044-201-7640)
(수자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혜윤 (044-201-7651)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1-7665)
(빛공해방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860)
		담당자	사무관	박민윤 (044-201-6799)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 가습기살균제 사건 → 참사(국가 추모사업), 배상책임 주체 : 기업 → 기업 + 국가로 확대 - 기후부 주관 피해구제위 → 국조실 주관 배상위 - 피해자 생애전주기 지원 강화 * (중고교) 인접학교 우선 배정 (대학) 교육비 지원 (직장인) 연 12일내 치료휴가 보장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 온전한 배상 추진 -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조속한 일상회복 기여	공포 후 6개월	환경피해구제과 손삼기 과장 (044-201-6810) 최재석 사무관 (044-201-6744)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인원 수 조정 등 구조 개편	위원회 역할 실질화·내실화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력 및 정책 이행력 강화	공포한 날	기후위 총괄기획과 손선미 과장 (044-200-1916)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 마련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가능	공포 후 6개월	이광현 사무관 (044-200-1919)
		국립기후과학원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신설	과학에 기반한 기후정책 수립 지원	공포 후 6개월	기후에너지정책과 이경수 과장 (044-201-6640) 박형욱 사무관 (044-201-6649)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공포 후 6개월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임호순 과장 (044-201-6701) 정진성 사무관 (044-201-6706)

연 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 온실가스 감축에 헌법기관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기후에너지정책과 이경수 과장 (044-201-6640) 김승현 사무관 (044-201-6657)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회의 심의 기능 강화	공포 후 6개월	류형관 사무관 (044-201-6647)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 신설	○ 기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공포한 날	기후적응과 이채원 과장 (044-201-6950) 이서연 사무관 (044-201-6965)
		○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 ₃) 추가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도 기여	공포 후 6개월	기후경제과 김마루 과장 (044-201-6580) 소병훈 사무관 (044-201-6590)
3	화학물질관리법	○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 포함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 * (현행) 섭취·흡입·판매·제공 등 금지 → (개정) 환각물질 정보(효과 등) 표시·광고·게시 금지	○ 환각물질 제품 사용에 관한 정보의 표시·광고, 온라인 게시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환각물질 오·남용과 확산 방지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화학안전과 손명균 과장 (044-201-6831) 진동일 사무관 (044-201-6832)

연 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기업) 및 지원사업 확대	○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에 대기업 등과 동반진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물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공포 후 3개월	물산업협력과 김범직 과장 (044-201-7631) 김선아 사무관 (044-201-7640)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명확화, 법정 법인 및 기관운영 출연근거 마련 * 현행 법령상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의 출연·지원 근거 부재	○ 기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 등의 출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초 공공데이터인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데 기여	공포 후 6개월	물재해대응과 정혜윤 과장 (044-201-7651) 김정민 사무관 (044-201-7665)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주기(5년)에 맞춰 빛공해영향평가 주기 조정(3년→5년) * (배경) 계획·영향평가 주기가 달라 계획 수립에 영향평가 결과 반영 어려움	○ 최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공포 후 1년	대기환경정책과 양한나 과장 (044-201-6860) 박민윤 사무관 (044-201-6799)